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6. 20.(금) 10:00

제255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가족국 가족정책과 소관)



복 지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702호
-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5. 5. 29.
- 라. 회부일자 : 2025. 5. 29.

2. 제안이유

놀이돌봄 서비스 제공의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이용료 감면 기준을 현실화하여 단체 이용자 등의 실내놀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놀이돌봄 서비스 제공의 근거 조항 마련(안 제3조제4호 신설)
- 나. 공공형 실내놀이터 이용료 감면 기준 및 대상 확대 (안 별표 2)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제52조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가. 개정 이유

실내놀이터 이용에 따른 돌봄 서비스 근거를 추가하고 이용료 감면 기준 등을 확대하고자 개정함.

나. 주요 내용

1) 놀이돌봄 서비스 제공의 근거 조항 마련(안 제3조제4호 신설)

- 보호자 양육지원을 위한 놀이돌봄서비스 제공

2) 공공형 실내놀이터 이용료 감면 기준 및 대상 확대 (안 별표 2)

구 분	추 가 대 상	비고
전액 감면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입소자 및 인솔 성인	
50% 감면	1. 금천구 소재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에서 놀이터 이용 시	

다.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놀이돌봄 서비스 제공의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이용료 감면 기준을 현실화하여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시행 2025. 4. 1.] [법률 제20885호, 2025. 4. 1., 일부개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3. 22., 2017. 10. 24., 2019. 1. 15., 2021. 12. 21., 2023. 7. 18.>

1.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 가.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나. 정서적·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치료하는 시설
4.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아동상담소: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아동전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연극·영화·과학실험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9. 아동보호전문기관
10.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
11. 제10조의2에 따른 보장원
12.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13.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